

## <2022년 제2회 우수조달 공동상표 참여 안내문>

### ▣ 참가자격(필수사항)

1.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[www.g2b.go.kr](http://www.g2b.go.kr))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  
-공공구매 제도에 의한 신청품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확인 인증 기업

2. 신청품목과 관련된 기술 및 품질 인증 각각 1개 이상 보유

|      |  |
|------|--|
| 기술인증 | NEP, NET, 전력신기술, 녹색기술, 신기술농업기계,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(가구제품에 한함)   |
| 품질인증 | 성능인증, GS, GD, K마크, 에너지소비효율1등급, 에너지절약마크, 고효율기자재, 신재생에너지설비, GR, 환경표지, KS, 단체표준,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, 품질보증조달물품, Q마크, KAS인증 |

\*품질인증 미보유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출(접수마감일 기준 2년이내)

3. 기업신용평가 등급 B- 이상인 기업(대표법인의 신용등급이 없을 경우)  
- 기업신용평가 CCC+ 이하 부적합 처리

### ▣ 참가요건

1. 대표법인(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)에 운영 중인 공동브랜드 ‘펌프로’ 참여조합원사로 등록된 기업

-비참여조합원사 참가 방법

1) 제출서류 : 가. 공동브랜드 펌프로 참가 신청서

2) 참여조합원 분담금 : 분담금 3,000,000원

(분담금은 품목수와 상관없이 동일하며 기업 출자금이 아닌 사업을 위한 분담비용임)

3) 입금 계좌 번호 : 우리은행 1005-001-417904, 예금주: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



## ▣ 물품 지정 신청 안내

1.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(직접생산확인 인증을 획득한) 품목 중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

2. 신청품목 및 지정내용

1) **수중펌프 신규 최초 지정**

2) 원심펌프 신규업체추가 및 원심·수중펌프 신규규격(인증)추가

3) 수중펌프 및 원심펌프 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(8자리) : 신규품목지정

3. 신청요건

- 동일 품목을 지정받고자 하는 5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청
- 5개 이상의 중소기업 중 40%는 소기업이어야 함
- 지정받고자 하는 품목과 관련된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 비율이 40% 이상

<인정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의 가중치 배점>

|      |  |      |
|------|--|------|
| 기술인증 | NEP, NET, 전력신기술, 녹색기술, 신기술농업기계지정   | 1점   |
|      |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(가구제품에 한함)  | 0.5점 |
| 품질인증 | 성능인증   | 1점   |
|      | GS, GD, K마크, 에너지소비효율1등급, 에너지절약마크, 고효율기자재, 신재생에너지설비, GR, 환경표지, KS, 단체표준,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, 품질보증조달물품, Q마크, KAS인증 | 0.5점 |
|      | *품질인증 미보유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제출<br>(접수마감일 기준 2년이내)   |      |

※기술인증 중 특허의 경우 통상실시권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통상실시권은 배점이 '0'점임

※보유비율 산출방법 : 참여기업 기술(품질)점수 합계 ÷ 참여기업수 × 100 = % (1개 기업 최대 획득 점수 1점)

4. 지정절차

- ① 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에 대하여 물품식별번호 등록(상품정보시스템)
- ② 물품평가심사자료 접수(조달청) - 접수기간
- ③ 참여기업별 현장실태조사(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조달품질원)

- ④ 물품평가심사(참여기업별 기술평가심사) -발표심사
- ⑤ 제품규격서 검토(조달품질원) - 심사기간과 관계없이 진행
- ⑥ 법인평가심사자료 접수(조달청)
- ⑦ 법인평가심사(대표법인 PT발표) - 원심펌프 지정 신청시는 생략
- ⑧ 최종심사(계약심사협의회 상정)
- ⑨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지정증서 교부

5. 지정기간(최대 6년 = 최초지정 3년 + 연장심사 3년 이내)

- 최초 3년으로 하되 최초지정 1년 6개월 후 지정관리심사에 따라 잔여 지정기간(1년 6개월) 지정 유지 또는 취소를 결정
- 최초 지정 3년 후 연장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
- 수중펌프 및 원심펌프의 지정기간은 최초지정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됨
  - ▷수중펌프 : 지정일로부터 3년
  - ▷원심펌프 : 2017.08.31.~2023.08.30.까지 (연장심사 완료)

※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([www.pps.go.kr](http://www.pps.go.kr)) - 업무안내 - 주요정책 -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2022년 제3회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신청서

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| 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|-----|--|
| 신청<br>현<br>황   | 업 체 명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대표자 |  |
|  | 주 소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전 화 |  |
|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FAX |  |
| 참<br>가<br>품<br>목   | 품 목-1<br>(G2B번호)  | ex)원심펌프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|  |
|  | 기술현황  | ex) 실용(전용)1건,특허(전용)1건.... |     |  |     |  |
|  | 품질현황  | ex) KS 1EA, 성능인증1건.....   |     |  |     |  |
|  | 품 목-2<br>(G2B번호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|  |
|  | 기술현황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|  |
|  | 품질현황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|  |
| 담당자  | 성명/<br>직책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메일 |  | 핸드폰 |  |
| 참고<br>사항   | 1. 특허인 경우 등록일로 부터 7년이 경과되면 제외됨.<br>2. 실용신안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면 제외됨.<br>3. 통상실시권은 참여기업에 부과되는 점수 없음.<br>4. 품목은 G2B 분류번호로 기재함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|  |
| 귀 조합에서 진행하는 2022년 제3회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에 위와<br>같이 신청 합니다.<br><br>2022년 06월 일<br><br>업 체 명 :<br><br>대 표 자 : <span style="float: right;">인</span><br><br>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귀하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|  |